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35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황명선·박 정·이개호

박용갑 • 정동영 • 채현일

민병덕 • 박지원 • 송옥주

이해식 • 이재관 • 윤준병

주철현 • 박균택 • 이훈기

김영환ㆍ허성무ㆍ김 윤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대통령 직 인수를 원활히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현 행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

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 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임기개시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 대통령당선인을 말한다.
-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임기개시당선인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임기개시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 ① 임기개 시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 하여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는 임기개시당선인 임기 시작일 이후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③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임기개시당선인"이란 「공
	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
	터 임기가 개시된 대통령당선
	<u>인을 말한다.</u>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임기개시당선인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관
	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u> 준용한다.</u>
<u><신 설></u>	제6조의2(임기개시당선인을 보좌
	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 ①
	임기개시당선인을 보좌하여 대
	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기개시당선
	인보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

는 임기개시당선인 임기 시작일 이후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 의 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는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 용한다.